

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4호에 의거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.

#### 백석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회의견

백석도시계획구역중 생산녹지지역 53,000m<sup>2</sup>, 자연녹지지역 110,200m<sup>2</sup> 등 총 163,200m<sup>2</sup>를 축소하고 이를 주거지역 112,100m<sup>2</sup>, 준주거지역 33,700m<sup>2</sup>, 일반상업지역에 17,400m<sup>2</sup>를 확대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도 350번과 연계되는 방성지역과 백석면사무소, 백석지서, 백석국교, 백석농협, 세아아파트 단지를 두 중심축으로 한 주거지역의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, 본 도시계획변경은 관계법과 주위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계획된 것으로 특히, 백석면사무소 옆 집단취락 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포함시켰던 기존 계획에 대해 일부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의회 의견을 표명함.

#### 【 16 】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견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6

제출자 : 양주군수

#### 제안이유

'92. 12. 1일 경기도로부터 변경 승인되고 '93. 6. 8일 의정부시 공고 제93-110호로 확정 공고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목표년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을 위한 각 부분별 계획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토지이용 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유도코자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 안에 내용중 우리군 관내 의정부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#### 주요골자

## 1. 도로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사용형태	기 능	연장(m)	기 정	종 점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정	대로	2	1	30	일반도로	보조간선도로	13,560	의정부 1동 43 (대1-2)	장흥면 구역계	경기도 고시 제242호 (87.9.8)
변경	"	1	6	35	"	"	10,940	11호 광장	"	
기정	증로	3	8	12	"	국지도로	3,945	증 1-3	증 1-7	경기도 고시
변경	"	1	15	20	"	주간선도로	4,040	광로 3-2	"	제105호 (87.4.20)
기정	"	1	9	20	"	"	5,598	장흥면구역계	대 2-1	경기도 고시
변경	"	1	9	20	"	"	5,598	대 1-6	장흥면 구역계	제105호 (87.4.20)
신설	"	1	22	20	"	보조간선도로	3,990	대 1-2	주내면 구역계	
신설	"	3	22	12	"	"	1,006	대 1-3	증1-15	

##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 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견

양주군수가 제출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 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견에 대하여 도시  
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4호에 의거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 
표명한다.

##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 결정에관한의회의견

의정부도시계획시설증 기존 도로인 장흥면을 통과하는 국도 39호선의 도로폭 30m를  
35m로 확장하고 도로폭 12m인 주내면 남방 - 유양간 도로를 20m로 확장, 신설되는

의정부 금신로 - 주내면 마천리간 도로와 의정부 비선거리 - 남방리간 도로등은 모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의회 의견을 표명함.

## 【 17 】 광적도시계획시설(하천)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6

제출자 : 양주군수

## 제안이유

경기도고시 제144호 ('87.5.27)로 결정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322호 ('87.11.24)로 지적고시 된 도시계획시설 중 가납리 하천(신천) 계획폭이 승리교 상류보다 하류가 하천 계획폭이 협소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예상되는 등 하폭이 불합리하여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(하천)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## 주요골자

○ 대상구역 :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 하천 (신천)

○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

구 분	형 태		위 치		면 적 (m <sup>2</sup> )	증 감 (m <sup>2</sup> )	비 고
	시설	번호	시 점	종 점			
당 초	하천	2	석우리 47-3	가납리 648-1	144,200		경기도고시 제 332 호
변 경	"	3	석우리 47-3	가납리 648-1	151,540	(증) 7,340	